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60
----------	-----

2021. 10. 22.(금)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 나. 제출일자: 2021년 10월 1일
- 다. 회부일자: 2021년 10월 5일
- 라. 상정일자: 2021년 10월 13일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교육국장 박창호)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맹동면·덕산읍 고등학교 평준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이상인 88.11%가 찬성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지역까지 확대하고,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 조건을 현실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을 추가함.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서성범)

- 본 조례 개정안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음성군 맹동면 및 진천군 덕산읍을 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대상 학교는 서전고등학교와 (가칭)본성고등학교 2개 학교임.
-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음성군 맹동면 및 진천군 덕산읍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투표 대상자	투표 인원	찬성 인원 (비율)	반대 인원 (비율)	무효 인원 (비율)	비고
3,174명	3,129명	2,757명 (88.11%)	262명 (8.37%)	110명 (3.52%)	

- 충북혁신도시의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예정자는 479명이고, 서전고등학교와 (가칭)본성고등학교 입학 정원은 16학급 400명으로 학생 배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평준화 지역의 서전고등학교 및 (가칭)본성고등학교와 인근 지역의 다른 고등학교 간 시설 등 교육환경에 격차가 있을 경우 지역 간 이주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청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충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로”를 “청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충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2조의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은 2023학년도 입학
생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u>청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충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u>로 한다.</p>	<p>제2조(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 ----- ----- ----- ----- <u>청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충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으로 ---.</u></p>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790호, 2021. 6. 22, 일부 개정]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후기학교(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가. 학교군 설정

나. 학생배정방법

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라.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마.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

4.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제4호 및 제3항의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 3.] [충청북도조례 제4354호, 2020.
1. 3., 일부개정]

제2조(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청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충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충주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는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